산업보건 **주요뉴스**

1월부터 시행되는 MSDS 제도, 어렵지 않아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 리플릿 배포

유해 ·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하여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 · 배포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 MSDS 대상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에 유해 · 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MSDS 제도, 어렵지 않아요"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산재보험 적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2년간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 의결

정부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일: 공포일)

정부는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2023.1.31.)한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021년 1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사업장당 10억 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택배사 · 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중복포함))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 · 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 · 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 ·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택배사 · 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